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개성공단 입주기업 '교역보험'으로 손실 보장

- 정부는 지난 7월 1일 경험보험(경제협력 사업보험)제도 시행에 이어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을 2009년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함.
 - 교역보험은 북측의 통행제한으로 인한 납품 차질을 보상하는 개성공단 통행제한 보험으로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.
-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교역보험제도 개선 사항은 '교역보험 취급기준' 개정을 통해 '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'과 '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'등으로 손실을 보장함.
 -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뒤 비상위험으로 인해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10억원 한도에서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70%까지 보상하는 제도임.
 -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국내 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, 5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.
 - 또한 교역보험 적용 대상거래 범위를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함.
- 이번 '교역보험 취급기준'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성기업들의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, 교역보험 가입을 통해 유사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음.
 -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2004년 5월부터 반입·반출보험 등 교역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.

(‘교역보험 취급기준’ 개정안 본격 시행,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, 8/10)